

2018년 상반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내역

구분	순번	자문내용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1	사립유치원 운영권 매매에 관한 사항 및 회계증빙과 장부 부존재에 관한 사항	
	2	학부모회에서 계약체결한 전세버스에 대해 어린이통학버스 해당 여부 및 관련 법령 적용 여부	
	3	계약예규규정에 명시된 계약기간보다 짧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법」 위반여부 및 물품사용과 변제공탁 가능 여부	
	4	계약상대자의 물품 인도 없이, 물품사용 가능 및 소유권 취득 가능 여부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소제기 가능 여부	
	5	공유재산의 소유권 보전 관련 사항	
	6	공무원 노조 사무실 전세권 존속기간 관련 사항	
	7	방과후학교 강사활동 확인서 발급 관련 사항	
	8	부정당업자제처분 가능 여부	
	9	공무원노조 사무실 관련 임대차계약 보증금 보전조치 사항	
	10	학교 급식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 관련 사항	
	11	「사립학교법」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임용전 비위사실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1 -

	13	지방공무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급여 관련 사항	
	14	정보공개 관련 사항	
	15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항	
	16	하자보수보증금이 공사대금의 일부인지 여부	
	17	공유재산 대부료(변상금) 등 관련 사항	
	18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및 안전심의 관련 사항	
	19	개발사업 협의업무 처리 관련 사항	
	20	학교법인 이전사업비 관련 사항	
	21	민원인 손해배상 관련 사항	
	22	「학원법」 위반 관련 사항	
	23	미등록(신고) 학원의 장,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관련 사항	
	24	보조요원 관련 사항	
	25	사립유치원 운영 관련 사항	
	26	학교부지 무단점유 관련 사항	
	27	학원설립에 관한 사항	

- 2 -

	2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해석 질의	
	29	사립유치원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	
	30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사무처리 사항	
	31	공무원 수당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32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 관련 사항	
	33	도시개발사업 내 교육청 소유 토지보상 관련 사항	
	34	사립유치원 관련 사항	
	35	공익법인에 대한 고발 관련 사항	
	36	민원조사 관련 사항	
	37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	
	38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 관련 사항	
	39	「청탁금지법」 과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사항	
총계			39건

※ 동일한 자문내용에 대해 2명 이상의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경우는 1건으로 간주

법률 자문 결과 보고서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	사립유치원 운영권 매매에 관한 사항 및 회계증빙과 장부 부존재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설립자와 임용된 원장간에 매월 일정금액을 주고 받기로 하고, 유치원의 운영권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감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회계증빙 및 장부를 제출·비치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48조(보고징수 등)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및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모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위반에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법」 제48조(보고징수 등)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법」 제48조(보고징수 등)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사립학교법」 제74조(과태료) 부과대상에도 해당됨.
2	학부모회에서 계약체결한 전세버스에 대해 어린이통학버스 해당 여부 및 관련 법령 적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부모회에서 직접 자금을 마련하여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기는 하나 학교가 아닌 학부모회가 운영하는 통학버스라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주로 포섭되는 이상 관련 법령 준수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3	계약예규규정에 명시된 계약기간 보다 짧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법」 위반여부 및 물품사용과 변제공탁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체결기간이 낙찰통지로부터 10일 이내인 계약예규 규정보다 짧은 경우, 「계약법」 위반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자의 검사검수요청 없이 자체검사 후 물품 사용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자의 대금 미청구 시 변제공탁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체결기간이 계약규정보다 짧아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예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법」 위반이 아님. <input type="checkbox"/> 계약예규규정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이므로 「계약법」 위반이 아님. <input type="checkbox"/> 물품의 검사검수 및 사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정 기한을 정해 검사검수 요청 및 기한 이후의 미요청할 경우 자체검사로 갈음하겠다는 통지하고, 그 기한 이후는 사용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자의 검사검수요청이 없어도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일단 사용을 개시한 이후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검사검수 관련하여 더 이상의 이의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납품된 물건의 망실이나 훼손, 구조나 성능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제나 물품의 반품은 불가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자에게 검사검수요청 없이 자체검사로 종결한다면 묵시적으로 해당물품을 검수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검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지체일수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수령을 요청 후, 만약 그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신속한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3	계약예규규정에 명시된 계약기간 보다 짧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법」 위반여부 및 물품사용과 변제공탁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자의 대금 미청구 시 변제공탁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자에게 대금 수령을 최고(독촉)하고, 만약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 수령거절을 이유로 한 변제공탁도 가능 함. <input type="checkbox"/> 장기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대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공탁이 가능함.
4	계약상대자의 물품 인도 없이, 물품사용 가능 및 소유권 취득 가능 여부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소제기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자의 물품 인도 없이 물품사용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물품의 정상적인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물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로 도급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도급은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인 바, 검수는 도급인의 권한이므로 검수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 검수를 완료하였다면 소유권이 인정됨. <input type="checkbox"/> 도급계약의 특성상 수급인이 검사검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상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아직 수급인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상태에서 곧바로 기관에서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물품을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이 되어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게 되는 등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목적물을 자체 점검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묵시적으로 시인하였다면, 목적물의 인도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전이라도 해당 물품을 사용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대가 지급 전에 물품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4	계약상대자의 물품 인도 없이, 물품사용 가능 및 소유권 취득 가능 여부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소제기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검사검수요청 등 계약절차 이행 청구 및 계약목적물 미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방을 상대로 계약절차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 물품 미사용으로 발생한 손해, 물품의 보관료 등도 함께 배상하여야 마땅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자는 검사검수 요청을 함으로써 그 절차 시행 후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수급인에도 불구하고 수급인 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수급인에 대해 검사검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래도 수급인이 미 이행 시에는 계약절차이행 청구소송 및 수급인의 검사검수요청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이 적당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만약 물품의 사용을 개시하였다면 계약절차이행 청구의 소 제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계약목적물 미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방을 상대로 계약절차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5	공유재산의 소유권 보전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유휴부지로 관리 중인 공유재산의 불법경작물 물권 보호 인정 여부와 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인도소송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농작물의 경우 경작자에게 소유권 인정하나, 지면 위 가시적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받기 어려우며 입목의 경우 악의 점유인 경우 보호받기 어렵다고 할 것임. 불법 경작자에게 토지 인도 명령 신청이 가능하나, 그 인적 사 항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불법 경작자에게 토지 인도 명령 신청이 가능하나,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하는 것이며, 불법경작자 무단 침입에 대해 헨스 훼손 등 재물 손괴죄를 물을 수 있으나,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대법원 판례상 토지 소유권 없는 자가 권원없이 경작한 경작물이라 하더라도 성숙하였다면 경작자에게 그 소유 권이 귀속된다는 입장이며,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집행 가능함(민사소송은 불가능으로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변상금 부과 및 민법상 부당이득반환도 제기 가능으로 사료됨. 공유지분의 필지에 한해서는 기관의 소유 지분에 한하여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권원없이 수목 등을 토지에 심은 경우 그 수목 등은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여야 하나, 판례는 농작물의 경우는 경작자 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함. 경작자(피고)가 특정되어야 행정대집행이나 인도청구 소송이 가능함.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하나만 인정 가능함(단, 경작자(피 고)가 특정될 것). 공유토지는 기관 지분에 한하여 손해배 상 청구가 가능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5	공유재산의 소유권 보전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유희부지로 관리 중인 공유재산의 불법경작물 물권 보호 인정 여부와 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인도소송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권원없이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성숙하는 등으로 독립 물건이 되었을 때 소유권은 민사상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나, 수목은 「민법」에 의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징수, 원상복구 또는 철거 등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나 변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민사상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토지의 경계 인식을 불능케한다는 인식이 없고 훼손에 대한 손괴 고의만 있을 시 재물손괴죄만 성립함. <input type="checkbox"/> 대법원은 타인 소유 토지에 권한없이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고 보나, 수목에 대한 경작자의 소유권은 보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인지 여부에 따라 처분(철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통한 점유권 회복을 하여야 할 것임. 변상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할 수 있다고 보이나, 점유 취득 물건을 소비 또는 판매한 부당이득은 반환 청구가 어려울 것임. 토지의 경계가 인식 불능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경계 침범죄가 성립가능하며 불법경작자 무단 침입 및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책임 여부는 불확실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6	공무원 노조 사무실 전세권 존속기간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노조 사무실의 최초 전세권설정등기 효력 유지 가능 여부 및 현재 근저당권자와 교육청의 임대보증금 반환 순위 관계	<input type="checkbox"/> 「민법」 제312조제1항에 따른 전세권 존속기간 10년은 당사자 간에 전세권 기간을 약정할 때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이 사안의 경우 약정기간이 2년이거나 1년 이므로 문제되지 않음. 덧붙여, 갱신 기간도 2년이거나 1년 이므로 문제되지 않음. 한편, 교육청의 전세권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었으므로 우선 순위임. <input type="checkbox"/>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참조),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시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 전세권 관계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된다 할 것임(대법원 2000.6.9. 선고 99다15122 판결 참조). 임대차 존속기간과는 관계없이 신 소유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전세권의 용익적 기능 즉 건물을 사용할 권리만 소멸하였을 뿐, 전세권의 담보적 기능 즉 전세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경매가 되었을 때 전세권 등기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남아있음. 전세권은 소멸되었지만 실제에 있어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과 큰 차이는 없음. <input type="checkbox"/>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겨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최초 계약 시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유효할 것으로 보임.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6	공무원 노조 사무실 전세권 존속기간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노조 사무실의 최초 전세권설정등기 효력 유지 가능 여부 및 현재 근저당권자와 교육청의 임대보증금 반환 순위 관계	<input type="checkbox"/>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사용·수익)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나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에 기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최초 전세권설정기’의 효력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그 우선 순위는 등기부상의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정하여짐. 이 사건의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의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로 사료됨.
7	방과후학교 강사활동 확인서 발급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방과후학교 강사활동 확인서 발급 시, 계약서상 수업시간과 안내장의 수업시간이 상이한 상황에서의 수업시간 산정 기준 문의	<input type="checkbox"/>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대로 수업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input type="checkbox"/>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서류 발급을 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계약서를 기준으로 수업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강사가 실제 수행한 수업시간이 계약서에 기재내용과 같다면 계약서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강사가 안내장에 기재된 대로 실제 수업을 진행하였다면 안내장을 토대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안내장에 기재된 시간, 즉 실제로 이루어진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8	부정당업자제제 처분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컨테이너 매각 입찰 공고를 통해 결정된 컨테이너 매각 계약상대자가 예측하지 못한 비용의 발생으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비록 매각계약대상자가 매입가격을 산정할 당시 특별한 비용(크레인 사용 비용)을 주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제정취지와 부정당업자제제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각계약대상자가 컨테이너 매각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계약의 적정 이행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매각계약대상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제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컨테이너 매각 입찰을 위해 산정된 기초금액에는 일반적인 처리비용만 산정하였고, 매각계약대상자 결정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컨테이너의 일반적인 처리비용 외에 추가 처리 비용(크레인 사용 비용 추가)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음. 이는 입찰공고 시 기초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매각계약대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매각계약대상자를 부정당업자제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9	공무원노조 사무실 관련 임대차계약 보증금 보전조치 사항	<input type="checkbox"/> 전세보증금 보전조치를 위해 ‘후순위 전세권 설정 등기 대신, 매년 고액의 보험료가 발생하는 ‘임차보증금반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공무수행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등 필요한 요구를 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시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무실 임대차계약시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전세권을 설정해야 함.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전세) 목적물에 전세권설정 등기뿐만 아니라 전세계약 기간 만료 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보증금반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전순위 채권 중 전세금을 제외한 근저당권의 경우, 통상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설정등기하고, 더구나 대출할 때 통상 원금도 같이 분할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채권액은 채권최고액 이하일 것임. 또, 근저당권자들은 토지도 공동담보로 확보하고 있는 바, 경매 시 건물 낙찰가와 토지 낙찰가를 안분하여 배당함. 통상 토지가액이 더 비싼 점까지 감안하면 건물가가 50%에 낙찰된다하더라도 전세금은 충분히 확보가 됨. 이러한 상황에서 고율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증보험 가입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경매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보유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후순위 전세권 설정등기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와 병행하여 당해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는 방법이 가장 유효, 적절하다고 사료됨.

- 13 -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9	공무원노조 사무실 관련 임대차계약 보증금 보전조치 사항	<input type="checkbox"/> 임대인(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회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여부 <input type="checkbox"/> 등기부상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은 건물전세권설정등을 하게 되면, 향후 건물 경매시에 낙찰가액 중 토지 가격을 제외한 건물가격에 대해서만 배당받는 것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불이행 시 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임대인 채무 불이행 시 보험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는 데 문제는 없음. <input type="checkbox"/> 임차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보험계약자(임대인)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경매 시 낙찰가액 중 토지가격을 제외한 건물가격에서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금 전부를 반환받지 못하면 그 잔액은 일반 채권으로서 토지가격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집합건물이 아니라면 전세권의 목적물인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만 전세권자에게 배당하게 됨. <input type="checkbox"/> 건물에 대하여만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므로, 향후 토지 및 건물 경매 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만 배당을 받게 됨.

- 14 -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0	학교 급식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 급식비 면제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및 급식비 징수가 근로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급식비 징수 면제를 받았던 근로자의 경우, 이번 급식비 징수조치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교 급식 종사자의 급식비를 면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급식비 징수는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의한 급식비 징수 면제는 은혜적 결정에 따른 것이며, 이는 교육청과 학교급식 종사자 간의 급식비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급식비 징수 여부는 선택사항인 점, 급식비는 일괄 면제가 아닌 학운위의 결정에 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급식비 징수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학교 급식 종사자의 급식비를 면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일부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급식비 징수면제는 사용자인 교육감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시혜적 차원에서 시행하여 온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급식비를 징수 한다하더라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음.
11	「사립학교법」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교비회계 예산에서 교재업체와 공모하여 실제공급 가격보다 과다계상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현금, 차명계좌 등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치원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 징계시효가 3년인지, 징계시효 5년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징계시효는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징계사유 5년인 금품수수, 금품횡령, 공금유용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업체로부터 돈을 반환받은 것 역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징계시효를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2	공무원 임용전 비위사실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임용전 비위사실이 징계사유(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당사자들이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서 합격하여 신규 교사로 임용된 점, 당사자들이 향후에는 이 같은 행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비위사실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봄이 상당함.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임용전 행위로 끝난 것일 뿐 교사 임용과 관련된 비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 비위사실이 공무원 임용 후에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는 모두 신규 교사 임용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규 교사 임용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사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직접적으로 손상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3	지방공무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급여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승진한 지방공무원의 연봉 책정이 잘못되어 과소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과소지급된 연봉액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동일직급 내 동일인의 연봉액이 과소 및 과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그 차액을 상계처리가능 여부와 과소지급된 연봉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방안	<input type="checkbox"/> 연봉책정을 정정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과소지급과 과지급이 모두 금전으로 그 차액이 있다면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과소지급한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승진가급을 가산하였어야 했던 연봉월액의 지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미지급분에 대한 급여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면 상계가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연봉 책정이 잘못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빌려준 돈과 임금과의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청구권 소멸시효 내에서 상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과소지급 부분에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승진가급을 가산하여 연봉월액을 지급하였어야 할 때부터 미지급 승진가급액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상계적상에 놓여 있다고 보여 짐. 기산일(승진가급을 가산하였어야 했던 연봉월액 지급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민법」 제163조 제1호] <input type="checkbox"/>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승진가급을 가산하였어야 했던 연봉월액의 지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임. 다른 특별한 방안은 보이지 않음.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4	정보공개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 관련 정보공개 청구 사항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의거하여 정보 공개청구자가 학교 측에 제시한 요청에 대하여 항상 반드시 응답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15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항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기간 및 요율	<input type="checkbox"/> 점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인 사실을 알면서 점유한 시점으로부터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하게 하고, 요율은 10/1000을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6	하자보수보증금이 공사대금의 일부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상계처리된 하자보수보증금 중 직접 사용하고 남은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대금에 포함되는지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제제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사대금이 아니라 시공사에 돌려줘야 할 금액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상계처리된 하자보수보증금 중 직접 사용하고 남은 1년 하자보수보증금 잔액은 공사대금에 포함된다고 보며, 남은 1년 하자보수보증금 잔액은 공탁처리 해야함. <input type="checkbox"/> 제제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시공사에 돌려줘야 함. <input type="checkbox"/> 제제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시공사에 돌려줘야 하지만 채권자에게 정보를 주어 압류기회를 주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하자보수보증금은 제제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공사대금이 아니므로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이상, 남은 하자보수보증금은 시공사에 돌려줘야 함.
17	공유재산 대부료(변상금) 등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대부료(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권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시점	<input type="checkbox"/> 연체료는 대부료와 별도로 기산 적용
18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및 안전심의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절차상의 문제와 그에 따른 원안 가결로 통과된 안전의 무효 여부	<input type="checkbox"/> 위원장이 회의 소집에 대해 추인을 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위원장 부재 시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된 회의는 유효하다고 판단 됨. <input type="checkbox"/> 회의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며, 위원장 부재 시 참석자 중 최연장자나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가 임시위원장이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 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19	개발사업 협의업무 처리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개발사업의 학교용지 및 시설 무상공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시청은 교육청에 제출한 학교시설 무상공급 분담금 조기 분납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20	학교법인 이전사업비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학교법인이 이전사업비에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유용인지 여부와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고발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유용에 해당되며,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 손실에 따른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해당되며, 형사 고발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건설경기 악화 등 외부 요인으로 지방세 부과, 이사 책임이 아니며, 이사가 직무를 해태하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임원취임승인 취소 대상은 아님. 그러나 매매대금 부족분을 지급받기 위한 합의서를 받아 놓고도 학교법인에서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감소 결과를 초래하였다더라도 유용, 허가 용도 외 사용이 아님. 임원취임승인 취소나 형사 고발 대상도 아님. 세금 납부 지연이 이사의 직무 해태에 기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나, 직무해태 사실에 관한 명백한 입증이 필요함.
21	민원인 손해배상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법원의 판결없이 자체적으로 손해배상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적정한 손해액 산출을 위해서는 국가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의 배상판결에 의함이 바람직함. <input type="checkbox"/>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판결 없이 자체적으로 손해 배상은 어려움.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22	「학원법」 위반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등록된 학원의 정식 한글 명칭이 아닌 임의의 영문명 사용 가능 여부와 과태료에 대한 우선 집행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등록된 명칭이 아닌 영문명칭의 사용은 「학원법」 제15조의2 위반으로 보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23	미등록(신고) 학원의 장,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학원법」에 따른 미등록(신고) 학원의 장,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과태료 부과 처분 가능 여부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제외 대상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미등록(신고) 학원의 장,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성범죄 경력을 확인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제외 대상자의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과태료 또한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미등록(신고) 학원의 장,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성범죄 경력을 확인 할 의무가 발생하며,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제외 대상자의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발생하며,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미등록(신고) 학원의 장,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발생하나, 다만,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법률문인 취지상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움 경찰서에서 교육기관 소속직원임을 입증할 수 없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청소년성보호법」에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움.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24	보조요원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교습소에 채용된 보조요원이 학생들의 시험지 등을 채점(단순채점 포함)하는 행위가 교습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개인과외교습자가 보조요원을 채용함은 가능하지 않음. 보조요원이 학생들의 시험지 등을 채점하는 행위는 교습행위로 보아야 함. 다만, 시행규칙상 단순채점 행위는 교습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보조요원의 채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단순채점 행위의 경우 교습행위로 볼 수 없고, 그 밖의 채점행위는 그 방법에 따라 교습행위인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소와 달리 보조요원을 채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보조요원이 시험지 채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점과 함께 첨삭 등을 해준다면 교습하는 행위로 해당할 수 있는 바, 채점이라고 하여 무조건 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개인과외교습자가 보조요원을 채용함은 위법하다고 사료됨. 보조요원이 학생들의 시험지 등을 채점(단순채점 포함)하는 행위는 교습행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개인과외교습자가 보조요원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학생들의 시험지 등을 채점(단순채점 포함)하는 행위는 보조요원이 할 수 없는 행위로 보임.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25	사립유치원 운영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당연 퇴직 사실의 미보고에 따른 부당 수령 지원금 환수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 및 행사기간과 당연 퇴직 사립유치원 원장의 유치원 운영 및 보조금 수령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고발 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강제집행불능처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형사고발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무단점유에 따른 형사고발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급된 보조금의 소멸시효는 소급 해임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5년간 진행함. 소급 해임 보고를 한 때까지 원장으로 근무한 점은 최근까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발대상이 됨. <input type="checkbox"/> 보조금 지급 후 5년이 경과된 부분의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당연 퇴직 원장의 행위로 인한 행정관청의 적법치 못한 공무집행은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 보아 원장을 고발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금을 받은 때부터 진행하며, 지금으로부터 5년 이전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수령한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음. 공무집행방해죄 뿐 아니라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소멸시효 기산일은 “보조금을 수령한 때”이며, 그 때부터 5년 간 행사할 수 있음. 해임 보고를 하지 않고 유치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사립학교법」 제74조 제2항)에 불과할 뿐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발대상이 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부당 수급 소멸시효는 5년이며 보조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진행함. 해임 보고를 하지 않고 유치원을 계속 운영한 것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바, 방해사실이 아직까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고발하여야 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26	학교부지 무단점유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토지를 불법 점유한 건물(추정)을 자녀에게 소유권 및 점유권의 상속가능 여부와 행정상 철거 가능 여부와 무단점유 해소방안	<input type="checkbox"/> 고인의 자녀가 고인이 점유하던 무허가 건물을 계속 점유 하면 고인의 자녀가 점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인 의 자녀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음. 교육감 소유의 토지를 9/10에 해당하여 사실상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면 위 토지에 대한 철거 및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불법 건물이라 하더라도 한정승인 한 자가 소유권 및 점유권을 상속하였고, 망인에게 했던 것처럼 상속인에게 사용료를 받으면서 토지사용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더 이상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없다면 주택을 철거하라고 할 수도 있음. 망인 소유의 동산이 있을 것이고 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자가 점유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함으로 행정대집행은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위 주택 중 교육청 소유 토지를 침범한 부분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미등기 건물로 취득되어야 하며 적법·불법 여부 관계 없이 그 건물에 대한 점유권 인정되며 점유하고 있다가 사망 시 자녀의 점유권 취득이 가능함. 무단점유에 해당 하며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고 아울러 원상 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를 명할 수 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제1항), 이를 미 이행시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할 수 있음(동법 제81조,83조 등 참조).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다면 소유자에게 변상금 징구하여야 하며 단순 점유자에게는 징구할 수 없음.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27	학원설립에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학원법」을 적용 받아 등록하는 중장비운전학원의 건축물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원법」의 ‘학원’으로 교육청에서 설립, 등록해 주고 있으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이면 학원 으로 등록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학원법」 학원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등록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중장비운전학원의 건축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이어야 할 것으로 보임.
2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해석 질의	<input type="checkbox"/>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취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 설립 전 사전심의의 의미하는지 여부와 행정권한자인 지자체장이 관계법령에 의거 신고(허가)수리된 시설물을 사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처리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 설립 전 사전심의의 의미한다고 할 것임. 사전심의 없이 신고(허가) 수리된 시설물 일지라도, 사후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심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법령에 따른 집행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사후에 심의하여 위 시설물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미 신고(허가) 수리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 설립 전 사전심의의 받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후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심의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29	사립유치원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용 전, 「사립학교법 위반」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임용전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판례를 보면, 임용 과정에 비위가 있는 사례로서 임용 이후 교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임용 전 행위를 소급적용하여 징계 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임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서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임용일 이후의 일로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가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임용 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징계가 가능함.
30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사무처리 사항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아닌 사인이 유치원의 인사 및 회계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상관없이 행정처분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설립인가 취소 및 유치원폐쇄 행정처분 가능 <input type="checkbox"/> 설립인가가 운영자 아닌 자의 명의로 인가된 것은 사실이나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령들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설립인가 취소 및 폐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행정처분임. <input type="checkbox"/> 검찰처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 가능
31	공무원 수당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미지급한 공무원수당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급여 정기 지급일에 미지급수당의 일괄계산 지급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수당이 월할지급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기관 측의 잘못으로 수당지급을 누락한 것이므로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괄계산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32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직위해제 교사의 징계의결 보류로 직위해제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교사의 기본권 침해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교사의 기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교사의 기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임.

- 25 -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33	도시개발사업 내 교육청 소유 토지보상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교육청 소유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 및 이차지급 청구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교환계약에 의해 쌍방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교육청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는데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 점유사용 시점부터 사용 수익하는 시점까지 그로 인한 이득을 교육청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4	사립유치원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권 매매와 회계증빙 및 장부부존재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운영권을 양도, 양수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및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모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되며, 감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회계증빙 및 장부를 제출 비치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48조(보고징수 등)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운영권을 양도, 양수할 경우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위반에 해당 됨. 감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회계증빙 및 장부를 제출·비치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48조(보고징수 등)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 됨.
35	공익법인에 대한 고발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변조행위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해당 여부 및 감독청의 승인 없이 기부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해당 여부와 법인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고발대상	<input type="checkbox"/> 이사회회의록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감독청의 승인 없이 기부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법인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발 가능함.

- 26 -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36	민원조사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한 말과 외부인의 활동 관련된 질의서를 외부단체와 학부모들에게 보낸 행위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학교장이 결재 완료된 회의록이 아닌 다른 회의록을 실수로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법령 안내	<input type="checkbox"/>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미성립하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아님. 단순실수라면 처벌근거 없음.
37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교장이 부당지시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교직원의 진술만으로 학교장의 부당지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교직원은 본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부당지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교직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학교장의 부당지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교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학교장의 부당지시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학교장의 부당지시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다른 목격자 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교직원의 진술만으로 부당지시를 인정할 수 없음.
38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교육공무원에게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을 적용하여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제2항 9. 「공직선거법」 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적용범위	<input type="checkbox"/>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워 기관 감사처분기준에 따른 경고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판단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경고, 징계 양자 가능하다고 판단함.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실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견은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됨. <input type="checkbox"/> 정치 운동의 금지에 위반된다면, 징계 의결 요구가 타당함.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제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연번	구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변요지
39	「청탁금지법」 과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청탁금지법」 과 「공무원행동강령」의 상하위법 관계 여부 및 개정시기가 다를 경우의 문제점	<input type="checkbox"/> 「청탁금지법」 과 「공무원행동강령」이 상하위법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청탁금지법」이 개정된 경우, 하위법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하며, 징계양정에 고려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청탁금지법」 과 「공무원행동강령」이 상하위법 관계이며, 「청탁금지법」이 「공무원행동강령」의 상위법이라는 전제하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위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공무원행동강령」 개정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 기타 정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청탁금지법」 과 「공무원행동강령」이 상하위법 관계가 아니어서, 두 법령이 위임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개정 시기가 다르다고 하여 법 체계상 문제되지 않음. 다만, 「청탁금지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이 법 통일성이나 예견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청탁금지법」 과 「공무원행동강령」이 상하위법 관계가 아님. 「공무원행동강령」을 「청탁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 완화할 예정으로 있음이 명백하다면,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등과 함께 여러 가지 정상 사유 중의 하나라 참작할 수는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시에 고려할 사안으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청탁금지법」 과 「공무원행동강령」이 상하위법 관계로 보기 어려움. 개정시기가 다를 경우 문제가 없고, 현재까지 개정하지 못한 것은 징계양정 책정 시 고려사항은 아님.